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18세 미만인 자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18세 이상 근로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인 자와 18세 이상의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됩니다.

※ 야간근로 :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

시간외근로의 제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연소자와 임산부의 시간외근로의 제한			
구분	1일	1주	1년
18세 미만자(연소자)	1시간	6시간	×
산후1년 미만 여성	2시간	6시간	150시간
임신 중 여성	절대금지		

갱내근로의 금지

- 여성은 갱내 근로가 금지됩니다. 「갱내근로」란 광업에만 한정 된 것이 아니며, 「갱내」란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지표에 드러남 없이 지하에 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하도를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보건·의료 또는 복지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내지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실습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여성의 갱내근로가 가능합니다.

생리휴가

- 여성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출근율,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직종, 근로시간(단시간 등)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벌칙

- 여성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일하게 한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성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성근로자에게 갱내근로를 시킨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생리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용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